

채권법 7

- 이자채권
- 개념: 이자란 금전기타 대체물의 사용의 대가로서 원본액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말한다. 이자는 원본채권의 이행기까지의 사용대가로서 법정과실(제101조 2항)의 일종이므로, 주식의 배당금과 같이 사용대가가 아닌 것, 이행기가 지난후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이자(손해배상)은 이자가 아니다.

- 이자의 제한(고율의 이자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
- 1. 대부업법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의 시행령 제5조
- 대부업의 등록을 한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의 법인에게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금의 이자율은 현재 연 **39%**를 초과할 수 없다.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일부무효)이며, 채무자는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2. 이자제한법
- □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제2조 1항), 그에 따라 연 **30%**를 최고이자율로 정하였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제2조 3항). □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조 4항)

-). □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나(제7조),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이자율 제한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을 적용하여 이자제한법에 따른 제한이율을 적용한다.

- 제479조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 폭리행위(제104조, 제103조)에 기하여 이루어진 초과이자의 반환청구권
- 이자제한법 제정 전에는 고율의 이자는 민법 제104조와 103조에 의하여 판단함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인 부분의 이자 약정을 원인으로 차주가 대주에게 임의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통상 불법의 원인으로 인한 재산 급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나, 불법원인급여에 있어서도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이거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커서 급여자의 반환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되므로,

- 대주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이율의 이자를 약정하여 지급받은 것은 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차주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그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인 대주에게만 있거나 또는 적어도 대주의 불법성이 차주의 불법성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차주는 그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불법성비교론)
- (출처 : 대법원 2007.2.15. 선고 2004다50426 전원 합의체 판결【대여금반환】 [집55(1)민,66;공 2007.3.15.(270),437])